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9
----------	------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과 범위 규정(안 제4조~제5조)
- 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서, 마을회관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그 밖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상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수가 5명 이상일 것
2.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화장실 및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1년 이상 자체적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료 및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2. 냉·난방비
3.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자 수, 시설 규모, 관리 방법·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일부터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같은 기간씩 연장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이용자 관리
2. 이용자 권익 보호
3.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

4. 민원 발생 여부

5. 지원금 사용 내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복지법」(2024. 1. 2. 일부 개정, 2024. 4. 3. 시행)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 4. 3. 일부개정, 2024. 4. 3. 시행)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 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 실	화장 실	물리 치료 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 기 시 설	강의 실	휴 게 실	객 실	공동 목욕 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p>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p> <p>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p> <p>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